#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

(153-80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710 .전화:(070) 8233-3405 / 전송:(02)2026-8677 / 담당 : 박재성

문서번호 : KASH-경영기획-26-064
시행일자 : 2026. 10. 30(금)
수　　신 : 스마트홈산업 관계자
참　　조 :
제　　목 : 2026년「스마트홈 유공자 정부 포상」시행 계획 안내

1. 귀 사(기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스마트홈 산업 분야에서 성실·청렴·창의적인 자세로 직무에 정려하여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정부 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스마트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스마트홈 유공자 정부 포상」을 추진코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포상 개요
o 포 상 명 : 스마트홈 유공자 정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o 대　　상 : 스마트홈 관련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 회사 또는 기관에 소속된 자에 한함)
o 시 상 일 : 2026년 12월 말 예정 (수상자 별도 안내)
o 훈　　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4점(포상자수는 변동 가능)

나. 신청 및 선정 방법
o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30일(금) ~ 11월 20(금)
o 신청자격 :「스마트홈」분야에서 산업 발전에 3년 이상 공헌한 자
※ 제외 기준 : 첨부의 안내서 참조
o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회 - 3차 산업부 심사 후 선정

다. 제출 서류 - 붙임 2 신청서류 참조 (직인, 서명 날인 필)
①「스마트홈 유공자 정부 포상」공적조서, 동의서, 기관정보 각 1부.
② 소속 기업체(기관) 산재율 명단공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1부.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 조회공문 사본 각 1부.
(공문조회 어려울 시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 조회 후 캡쳐본 )

라. 접수 방법

o 신청 방법 : 서류작성 후 날인 후 이메일 접수
(PDF 파일 제출, 공적조서는 한글파일/PDF파일 모두 제출))

o 제 출 처 : 협회 경영기획본부

- 연락처 : 070-8233-3405

- 이메일 접수처 : recruit@kashi.or.kr

붙임 : 1.「스마트홈 유공자 정부 포상」추진 계획(안) 1부.
2.「스마트홈 유공자 정부 포상」신청서류 양식 1부. 끝.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장

[붙임1]

# 「스마트홈 산업 유공자 정부 포상」 추진 계획

## 1. 추진 배경

□ 스마트홈 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 경쟁 산업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임

□ 이에 스마트홈 분야에서 성실.청렴.창의적인 자세로 직무에 정려하여 산업 활성화 및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시상코자 함

## 2. 표창 개요

o 표창대상 : “개인“ 시상

- 회사(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함

o 훈　　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구 분 | 훈 격 | 비 고 |
|---|---|---|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표창 | 4점 |

## 3. 포상 목적

o **표창의 시행으로 스마트홈 산업계 및 연구자의 사기 진작**

-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인 스마트홈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인 기술력 확보와 창의적인 제품 및 서비스 발굴 및 독려

o **스마트홈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정부표창 시행**

- 스마트 산업은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경쟁력을 좌우하며, 전자, 전기, 건설, 의료, 행정 등 융복합화 된 제품과 서비스가 상호 연동되는 분야이므로 새로 개발되는 제품에 대한 장려 필요

## 4. 추천 방법

○ 신청대상

- 신청자격 :「스마트홈」분야에서 성실.청렴.창의적인 자세로 직무에 정려하여 산업 발전에 3년 이상 공헌한 자

○ 추천분야

< 스마트홈 산업 범위 >

| 구 분 | 범 위 |
|---|---|
| 인프라 | ○ 공간적 범위 : 공동주택, 단독주택, 호텔, 리조트 등 거주 공간을 총칭함<br>○ 기술적 범위 :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 배선/배관 기술 등 |
| 기기&S/W | ○ 홈플랫폼 기기 : 홈서버, 홈게이트웨이, 스마트 셋탑박스/음성스피커 등<br>○ 정보가전/정보통신기기 : 지능형 또는 제품 간 통신 기능을 보유한 기기 (스마트TV, 스마트헬스케어 포함)<br>○ 홈네트워크 솔루션 : 홈네트워크 시스템 및 미들웨어, 플랫폼 |
| 서비스 | ○ 인프라 및 기기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br>○ 단순제어에서부터 멀티미디어 양방향 서비스를 총칭 |

## 5. 심사 기준 및 방법

○ 서류심사

- 제출 서류 확인
-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구 부처 장관 및 방송위원회 표창 포함)

○ 본선심사

- 외부 전문가(3인) 포함 총 5인 이상 구성된 심사위원회 개최
-『정부부처 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적정성 여부 확인
- 수공정도, 기간, 산업화 기여도 등 개인의 이력 및 스마트홈 산업의 시장 확대, 보급성 등의 공적에 대해 평가

o 심사표

| 구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배 점 | 득 점 |
|---|---|---|---|---|
| 1 | 개인의 이력 (30점) | 수공정도 (직위) 주1) | 5 | |
| | | 수공기간 (해당업체 근속연수) 주2) | 5 | |
| | | 전문가의 자격 (자격증 및 소속 부서의 적합성) | 10 | |
| | | 대외수상 실적 및 산업화 기여도 | 10 | |
| 2 | 개인의 공적 (70점) | 우수성 및 보급성 | 15 | |
| | | 창의성 | 15 | |
| | | 스마트홈 산업의 시장 확대 및 보급성 | 30 | |
| | | 상기 심사항목 외에 특별히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10점 | 10 | |
| 합 계 | | | 100 | |

주1) 5: 대표이사 4 : 임원 3, 부/차장 2, 과장이하 1. 사원
주2) 수공기간: 15년이상(5), 10년이상 (4), 7년이상 (3), 3년이상 (2), 3년미만 (1).
※ 제외 기준 :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구 부처 장관 및 타 부처 표창 포함)

## 6. 추진 일정

o 「스마트홈 유공자 정부 포상」 신청서 접수 : ~ 26년 11월 20일
o 서류 및 심사위원회 심사 : 26년 12월 초
o 부처 보고 및 정부심사
o 표창자 알림 및 상장 전달 : 26년 12월 중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7. 서류 접수 방법

o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한글, PDF 파일 등)
o 제 출 처 : 협회 경영기획본부
- 문 의 처 : 070-8233-3405
- 이메일 접수처 : recruit@kashi.or.kr

## 8. 제출 서류 (첨부 신청서양식 참조 및 제출서류는 날인 필)

① 「스마트홈 유공자 정부 포상」 공적조서, 동의서, 기관정보 각 1부.
② 소속 기업체(기관) 산재율 명단공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1부.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여부 조회공문 사본 각 1부.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 조회 후 캡쳐본)

## 9. 추천 제한 기준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